

고용노동부

일하는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는
• 출산·육아지원제도 •

③ 무물TIME!?

•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④ 육아휴직제도는 무엇인가요?

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⑤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지원 받나요?

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로 통상임금의 80%(월 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원)를 지원합니다.

⑥+⑦ 부모육아휴직제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

부모가 모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로 지원합니다.
*월상한액: 1개월 200만원, 2개월 250만원, 3개월 300만원, 4개월 350만원, 5개월 400만원, 6개월 450만원

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, 우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

출산휴기급여
③ 무물TIME!?

⑧ 출산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?

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 90일(다대야 120일)을 사용할 수 있고, 이중 최초 60일(다대야 75일)은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⑨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?

물론입니다.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 충족 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지원됩니다.

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나요?

그렇지 않습니다.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인 출산여성에게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.

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, 우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⑪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도 지원이 있나요?

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경우 종소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기간동안 매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. 또한, 2022년 1월 1일 이후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해요!

⑫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?

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해당 기간 동안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종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.
*최대 2개월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지원해요!

지원금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, 우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

일하는 엄마 아빠의
부담을 덜어주는 출산·육아지원제도,

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!

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 •